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무역학석사 학위논문

한 · 미 FTA 원산지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연구

A Study on the Business Model
Utilize Korea-US FTA Origin Rules



2013 年 12 月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국제관세학과

강 민 규

本 論文을 姜玟圭의 貿易學碩士 學位論文으로 認准함.

委員長 辛容尊 印

委員 郭圭錫 印

委員 金煥成 印

2013 年 12 月

韓國海洋大學校 大學院

목 차

표 목차	iv
그림 목차	vi
ABSTRACT	vii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방법 및 구성	2

제 2 장 FTA와 비즈니스 모델

2.1 FTA 의의와 유형	4
2.1.1 FTA 의의	4
2.1.2 FTA 유형	5
2.2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2.1 FTA 추진현황	8
2.2.2 우리나라 FTA 추진경과 및 체결현황	9
2.2.3 FTA 발효국과의 교역현황	12
2.3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16
2.3.1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요	16
2.3.2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주요 고려사항	17
2.3.3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유형	18

제 3 장 한-미 FTA 원산지 규정

3.1 한-미 FTA 개요	21
3.1.1 한-미 FTA 의의	21
3.1.2 한-미 FTA 협정 구성	23
3.1.3 한-미 FTA 발효 후 교역현황	25
3.2 한-미 FTA 원산지 규정	28
3.2.1 한-미 FTA 원산지 규정 개요	28
3.2.2 완전생산기준	29
3.2.3 실질적변형기준	32
3.2.4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41
3.3 한-미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제도	46
3.3.1 원산지 증명 제도	46
3.3.2 원산지 검증 제도	49
3.4 한-미 FTA와 원산지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사점	50

제 4 장 한-미 FTA 원산지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4.1 미소기준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51
4.1.1 개요	51
4.1.2 사례 분석	52
4.2 중간재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56
4.2.1 개요	56
4.2.2 사례 분석	57
4.3 누적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60

4.3.1 개요	60
4.3.2 사례 분석	61
4.4 물품취급수수료 면제활용 모델 사례	63
4.4.1 개요	63
4.4.2 사례 분석	64
제 5 장 결 론	
5.1 연구 결과	66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68
참고 문헌	69



표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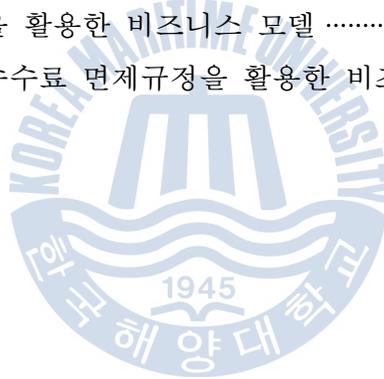
<표 2-1> FTA의 유형	6
<표 2-2> 한국의 FTA 추진현황	11
<표 2-3> 한국의 FTA 체결국별 수출현황	12
<표 2-4> 2012년 한국의 FTA 발효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 현황	13
<표 2-5> 한국의 FTA 체결국별 수입현황	14
<표 2-6> 2012년 한국의 FTA 발효 국가별 주요 수입 품목 현황	15
<표 2-7> 주요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요 및 특징	18
<표 3-1> 한-미 FTA 도입 일지	21
<표 3-2> 한-미 FTA 관세 양허 스케줄	22
<표 3-3> 한-미 FTA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23
<표 3-4> 한-미 FTA 협정문 각 장(Chapter) 제목	24
<표 3-5> 한-미 FTA 발효 후 교역현황('12.3.15 ~ '13.2.28)	25
<표 3-6> 대미 10대 수출품목('12.3.15 ~ '13.2.28)	26
<표 3-7> 대미 10대 수입품목('12.3.15 ~ '13.2.28)	26
<표 3-8> 한-미 FTA 완전생산기준 규정	30
<표 3-9>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부가가치기준 규정방법과 적용 사례 ..	35
<표 3-10> 한-미 FTA에 규정된 부가가치산정 기준의 선택적 적용방법 ...	36
<표 3-11> 한-미 FTA에 규정된 가공공정기준	39
<표 3-12> 한-미 FTA 보충적 원산지 규정	45
<표 3-13>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	48
<표 4-1> HS코드 610510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53
<표 4-2> D사 와이셔츠 소요부품명세서	53
<표 4-3> D사 와이셔츠 미소기준 산출내역	53
<표 4-4> HS코드 851829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55
<표 4-5> B사 스피커 미소기준 산출내역	55

<표 4-6> HS코드 900211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58
<표 4-7> HS코드 320820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61
<표 4-8> S사 페인트 소요부품명세서	62
<표 4-9> 물품취급수수료 징수근거 및 내역	64



그림 목차

<그림 2-1> 연도별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현황	5
<그림 2-2> B. Balassa의 경제통합 단계	7
<그림 2-3> 한국의 FTA 발효현황	10
<그림 3-1> 한-미 FTA 원산지 결정상 실질적변형기준 체계	33
<그림 3-2> 한-미 FTA 섬유 및 의류 공정별 원산지 규정	41
<그림 4-1> 미소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51
<그림 4-2> 중간재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56
<그림 4-3> C 업체 완성품 생산 흐름도	59
<그림 4-4> 누적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60
<그림 4-5> 물품취급수수료 면제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63



A study on the Business Model Case Utilizing of Korea-US FTA Origin Rules

Kang, Min Gyu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ariff
Graduate school of Korea Maritime University



Abstract

In the last 10 years, Korea has pushed ahead with FTA policies, putting multiple FTAs in effects starting with the effectuation of FTA with Chile in April, 2004. Currently, total of 9 FTAs are in effects including ASEAN, EFTA, EU, and Peru. Moreover, negotiations are being made for the agreements with countries, such as China, Canada and Mexico.

In the middle of this, historic FTA between Korea and US has been put in effect on March 15, 2012. Due to the FTA with US, the economic territory of Korea has been extended to 61% of world market and domestic companies have found ways to compete in international markets with favorable conditions as the access to the US market, the

largest consumer market, became more affordable more.

However, the effectuation of Korea-US FTA has not automatically guaranteed benefit as the conditions of Rules of Origins must be fulfilled first to take an advantage of mitigation or lift of barrier of tariffs.

The Rules of Origins of the Korea-US FTA is however more complex than previously effectuated FTAs, making it difficult for domestic companies to actively utilize; hence numerous cases, where companies are failing to benefit from the effects of the FTA, are being observed.

This thesis analyzes the Rules of Origins of the Korea-US FTA and present successful business models which actually created profit by utilizing the Rules of Origins of the Korea-US FTA, thereby providing assistance to domestic exporting companies in seizing new business opportunities in the US market.

Domestic companies will be able to utilize FTA more easily by using the strategic means of FTA business model for acquiring Korea-US FTA preferential tariffs. In this way, the companies can secure competitiveness in prices, which enable them to extend the presence in US market preemptively ahead of other competitors such as Japan and China. Furthermore, they can lay the ground for developing into a global company.

Macroscopically, it is also expected to help improve international credit standing and enhance national brand values. Many positive effects can be expected on the entire fields of Korean industries as the values of Korean companies' products rise and foreign investments in Korea are facilitated.

제 1 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WTO 다자주의와 양자 간 지역주의에 참여하고 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부진해지자 많은 국가들이 FTA 추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351건의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이 WTO에 통보되어 발효 중에 있고, 그 가운데 FTA는 204건(58%)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년 사이 본격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여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동시다발적인 FTA가 발효되어 아세안, EFTA, EU, 페루 등 총 9개의 FTA가 이행 중에 있으며,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 FTA 협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2년 3월 15일 국내시장의 15배이면서 전 세계 총 생산의 22%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었다. 한국은 미국에서 볼 때 7번째로 무역거래가 많은 국가이며, 미국은 한국에서 3번째로 거래가 가장 많은 교역 국가이다.

미국과의 FTA로 우리경제 영토는 전 세계 시장의 61%로 확대되었으며, 세계 최대의 내수지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시장접근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에 따라 우리기업이 이들 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FTA가 발효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FTA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제품이 한-미 FTA에서 정하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제품의 원산지가 협정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특혜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원산지 결정기준과 절차 등 원산지 규정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은 이전에 발효된 FTA와는 다르게 복잡하여 우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워 FTA 체결효과를 향유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분석하고 실제로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한 비즈니스모델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논문은 한-미 FTA 협정문, 원산지 관련 법령, 선행사례들에 대한 연구와 보고서, 국내에서 발간된 참고서적과 같은 문헌자료의 수집을 통한 연구방법을 기초로 하여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범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미국과 체결된 FTA로 한정하여 FTA의 의의와 유형,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의 개요,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주요내용 및 한-미 FTA를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연구 등을 연구범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모두 5장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방법 및 구성을 기술하고, 제2장에서는 FTA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FTA 추진경과와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가 처음 FTA를 체결한 2004년도부터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와의 교역량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의 개요와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기 전 주요 고려사항 및 유형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과 더불어 원산지 규정에 대한 주요 특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실제 우리나라 기업이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한 몇 가지 실제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수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은 결론 부분으로 본 연구의 요약,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다.



제 2 장 FTA와 비즈니스 모델

2.1 FTA 의의와 유형

2.1.1 FTA 의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은 특혜무역협정에 가입한 회원국 간 국가들로부터 이루어지는 무역에 있어서 관세를 철폐하거나, 완화된 비관세장벽을 적용하는 형태로 지역무역협정(RTA : Regional Trade Agreement)의 한 종류로 가장 낮은 단계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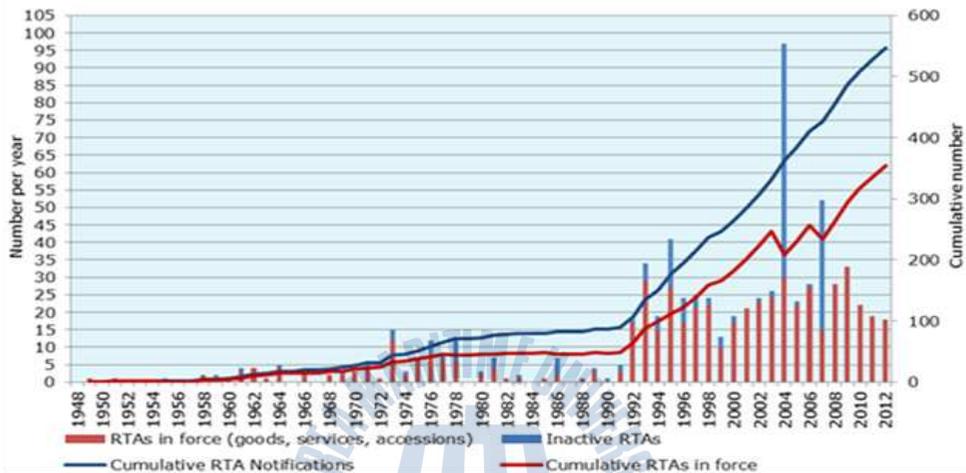
다자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가입한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 대우를 보장하는 WTO협정과 달리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 간에 낮은 관세 및 수출입제한을 적용하는 반면,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WTO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관세 및 제한을 유지한다.

양자 간의 자유무역협정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인 WTO의 이념, 즉 최혜국 대우에 기초한 무차별혜택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WTO도 자유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다자간 무역체제에서 지향하는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일정조건 하에서 자유무역협정이 WTO와 합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¹⁾

지역무역협정(RTA)은 <그림 2-1>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90년대 이

1) 박재봉, 2005. 자유무역협정(FTA)체제가 관세행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pp.15.

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오히려 꾸준히 확산되어 2012년 말 기준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건수는 351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이 204건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 : WTO(<http://www.wto.org>)

<그림 2-1> 연도별 지역무역협정(RTA) 발효 현황

WTO 체제 출범에 따른 다자 무역규범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FTA 체결 등 지역주의가 확장되는 이유는 WTO 합의를 이루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FTA가 개방과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²⁾

2.1.2 FTA 유형³⁾

FTA의 유형은 학자나 각 연구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고 있으며 유형별로 정리해보면 <표 2-1>과 같다.

2) 한국교육개발원, 2006.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pp. 11.
 3) 이선자, 2008.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칠레,한미 FTA를 중심으로한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pp. 45.

<표 2-1> FTA의 유형

구분(저자)	유형
UN	①장기무역협정 및 계약 ②관세율의 특혜적 적용 ③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④Sector간의 통합 ⑤자유무역지역 ⑥관세동맹 ⑦경제동맹
J. Tinbergen	①수량제한의 특혜적 적용 ②부분적 통합 ③자유무역지역 ④관세동맹 ⑤경제동맹
B. Balassa	①자유무역지역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경제동맹 ⑤완전경제통합
Alim Elagraa	①자유무역지역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완전한 경제동맹 ⑤완전한 정치적 통합
S. P. Magee	①자유무역지역 ②관세동맹 ③공동시장 ④완전한 경제통합
M. Chacholiades	①부분별 특혜무역협정 ②자유무역지역 ③관세동맹 ④공동시장 ⑤경제동맹

위 <표 2-1>과 같이 FTA의 유형은 다양한 형태로 분류될 수 있으나, 모두 설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FTA에 관한 대표적인 분류라 할 수 있는 B. Balassa의 견해를 살펴보겠다.

B. Balassa의 분류에 따르면 회원국들 간의 경제적 결합 정도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통합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가장 첫 단계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이 단계에서는 통합에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 상품이동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함에 따라 역내에서 자유무역을 보장하고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관세정책과 무역제한조치를 실행한다. 대표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들 수 있다.

여기서 더 발전된 형태가 관세동맹(customs union)이다. 대(對) 역외 공통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단계로 이 시기에는 각 가맹

국 상호간에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되고 비가맹국으로 부터 수입 시 각국이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세 번째로 각국이 부과하는 관세가 같아지면 다음단계에서는 공동시장(common market)을 구성한다. 공동시장이란,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역내교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며, 각 회원국들은 독자적인 경제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되고 있는 지역경제통합 형태를 말한다.

자유이동이 보장되면서 하나의 세계로 가는 물질은 더욱 가속화 되어 다음 단계에서는 경제동맹(economic union)이 결성된다. 경제동맹은 회원국 사이에 재정정책, 금융정책, 사회정책 등 모든 경제 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발전된 경제통합 형태이다. 즉, 이 단계에서는 각국이 서로의 정책들을 상호 협조 하에 조율해가면서 실시하게 된다.

경제동맹을 지나서 마지막 단계인 완전한 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union)체제 하에서 가맹국들은 상호간에 초국가적 기구를 설치한다. 초국가적 기구는 가맹국의 사회, 경제정책을 조정, 통합, 관리하는 형태로 각국은 하나의 단일경제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각종 절차를 진행한다. 하지만 문제점으로는 공동의 재정, 금융정책의 통일 과정에서 국가고유의 경제적 주권이 초국가적 기구로 이양되는 시기에 각국의 국가주권이 포기되어야 하므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결국 정치적 통합(단일국가)이 실현되어야 완전한 경제통합이 가능하다.



자료 : WEEKEND 매경

<그림 2-2> B. Balassa의 경제통합 단계

2.2 우리나라 FTA 추진현황

2.2.1 FTA 추진 필요성⁴⁾

과거 우리나라는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와 WTO(World Trade Organization)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의 입장을 계속 지지하였으며, 다자무역체제를 통해 대외 교역을 확대하여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최근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자유무역협정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과거 GATT체제보다 현재의 WTO체제에서 오히려 급속도로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많은 국가들의 이해관계로 인해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양자 간 지역협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야하는 이유는 첫째, 1992년 EU의 출범과 1994년 NAFTA의 발효를 계기로 지역주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FTA를 체결하지 않은 역외국가들이 위기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요 경쟁국이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통상환경 하에서 우리나라가 기존 수출시장을 유지하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FTA 확대에 전력을 다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내수가 부진해지면서 수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요 다른 교역국이 여타 국가와 먼저 FTA를 체결한다면 우리 상품이 고관세에 따른 가격경쟁력의 저하로 점차 그 시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4) 관세청 자료 참조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교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다.

둘째로 어쩔수 없는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 능동적·적극적으로 시장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국가 전반의 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FTA추진이 필요하다.

우리경제가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발전을 통해 진정한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요 통상정책으로 자리 잡은 FTA를 능동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심화되는 지역주의 추세를 고려할 때 우리가 거대경제권과의 연대를 추진하지 않고 종전처럼 다자주의에 안주함에 따른 위험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으로 우리기업들이 경쟁국 기업들에 비해 기존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고, 해외시장 진출기회를 잃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경제권 시장에서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조기에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2.2 우리나라 FTA 추진경과 및 체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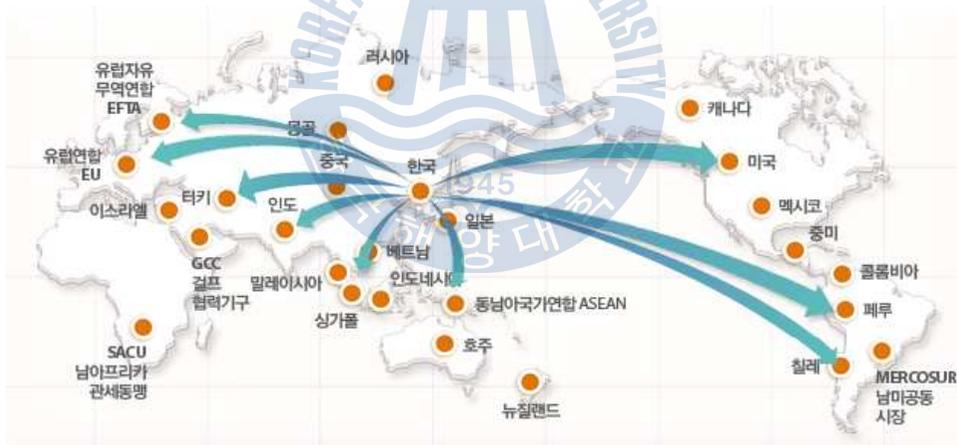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과 자원부국 및 주요 거점 경제권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해왔으며 전략적인 FTA 체결확대를 통한 FTA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통해 그동안 지체되었던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 내에 만회하였으며, 현재는 FTA 네트워크의 글로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확보를 지원하고, 동아시아 FTA 허브국가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다.

또한 FTA 체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분야에서의 관세철폐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보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를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WTO의 상품과 서비스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4년 6월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대통령훈령)을 제정하여 FTA 추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FTA 추진과정에 각계 전문가와 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여 이해 당사자 간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FTA 확산추세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고 개방을 통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FTA를 적극 추진한 결과, 칠레(2004.4.1), 싱가포르(2006.3.2), EFTA⁵⁾(2006.9.1), ASEAN⁶⁾(2007.6.1), 인도(2010.1.1), EU⁷⁾(2011.7.1), 페루(2011.8.1), 미국(2012.3.15), 터키(2013.5.1) 등 47개 국가의 FTA가 발효되었다. 2013년 2월에는 한-콜롬비아 FTA가 12월에는 한-호주 FTA가 타결되어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한 중국, 멕시코, GCC,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캐나다 등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자료 : FTA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http://www.ftahub.go.kr/kr/>)

<그림 2-3> 한국의 FTA 발효현황

- 5)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6)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7) 유럽연합(EU : European Union)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폴란드, 루마니아,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스, 포르투갈, 체코, 헝가리, 스웨덴,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몰타, 크로아티아

< 표 2-2 > 한국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9건)	칠레	'04.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싱가포르	'06.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06.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07.6월 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인도	'10.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11.7.1 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11.8.1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12.3.15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터키	'12.5.1 발효	유럽·중양아 진출 교두보
타결 (2건)	콜롬비아	'13.2.21 서명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호주	'13.12.4 실질적 타결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협상진행 (6건)	인도네시아	협상중	ASEAN 회원국중 우리의 최대 교역 국 (2011년 기준)
	중국	협상중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베트남	협상중	우리의 제6위 투자대상국 (2011년 기준)
	한중일	협상중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15개국)	협상중	세계GDP의 28.4%를 차지하는 동아시아 경제권
	캐나다	협상중	북미 선진 시장
	뉴질랜드	협상중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협상재개 여건조성 (3건)	일본	실무협의를중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멕시코	협상중	북중미 시장 교두보
	GCC (6개국)	협상중	자원부국, 아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4건)	MERCOSUR (4개국)	공동연구 중	BRICs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공동연구 중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중미 (6개국)	공동연구 중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말레이시아	공동연구 중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자료 : FTA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http://www.ftahub.go.kr/kr/>) 참조

2.2.3 FTA 발효국과의 교역현황⁸⁾

(1) 한국의 FTA 발효 국가별 수출 현황

2012년 한국의 FTA 발효 국가별 수출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우리나라 수출금액 대비 아세안(14.4%), 미국(10.7%), EU(9.0%)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경제위기로 인해 EU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2.9% 크게 감소하였다.

< 표 2-3 > 한국의 FTA 체결국별 수출현황

(단위 : 천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
전체*	금액	25,384	28,442	32,547	37,149	42,201	36,353	46,638	55,521	54,787	1.3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칠레	금액	71	115	157	312	303	223	295	238	247	3.6
	비중	0.3	0.4	0.5	0.8	0.7	0.6	0.6	0.4	0.5	
ASEAN	금액	2,402	2,743	3,207	3,875	4,928	4,098	5,320	7,180	7,915	9.3
	비중	9.5	9.6	9.9	10.4	11.7	11.3	11.4	12.9	14.4	
싱가포르	금액	565	741	949	1,195	1,629	1,362	1,524	2,084	2,289	9.0
	비중	2.2	2.6	2.9	3.2	3.9	3.7	3.3	3.8	4.2	
EFTA	금액	86	109	173	112	252	196	352	182	149	-21.6
	비중	0.3	0.3	0.1	0.2	0.3	0.6	0.5	0.8	0.3	
인도	금액	363	460	553	660	898	801	1,143	1,265	1,192	-6.1
	비중	1.4	1.6	1.7	1.8	2.1	2.2	2.5	2.3	2.2	
EU	금액	3,783	4,366	4,845	5,598	5,837	4,661	5,351	5,573	4,937	-12.9
	비중	14.9	15.4	14.9	15.1	13.8	12.8	11.5	10.0	9.0	
페루	금액	25	28	36	47	72	64	94	137	147	7.1
	비중	0.1	0.1	0.1	0.1	0.2	0.2	0.2	0.2	0.3	
미국	금액	4,285	4,134	4,318	4,577	4,638	3,765	4,982	5,621	5,852	4.0
	비중	16.9	14.5	13.3	12.3	11.0	10.4	10.7	10.1	10.7	

* 전체 : 우리나라 전체 수출

8) 부산경제진흥원, 관세청, 2012. 부산지역기업의 FTA체결국 교역현황 및 활성화방안, pp. 6-9.

(2) 한국의 FTA 발효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 현황

FTA 발효 국가별 2012년 주요 수출 품목은 EU(35.2%), 페루(45%), 미국(33.0%)등 전체적으로 수송기계의 수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광물성연료 및 석유화학제품은 ASEAN 및 인도에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2-4 > 2012년 한국의 FTA 발효 국가별 주요 수출 품목 현황

(기준 : MTI 2단위, 단위 : %)

순위	칠레	ASEAN	싱가포르	EFTA	인도	EU	페루	미국
1	수송기계	광물성연료	광물성연료	수송기계	석유화학제품	수송기계	수송기계	수송기계
	53.8	23.2	35.3	76.8	18.1	35.2	45	33.0
2	석유화학제품	전자부품	수송기계	산업용전자제품	수송기계	전자부품	석유화학제품	산업용전자제품
	7.9	16.3	23.8	3.7	17.1	12.4	7.9	14.2
3	광물성연료	수송기계	전자부품	고무제품	철강제품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철강제품
	7.1	10.9	23.1	1.6	15.8	10.5	10.4	7.1
4	철강제품	철강제품	금속광물	정밀기계	산업기계	광물성연료	산업기계	전자부품
	4.1	10.4	3.4	1.6	6.3	6.2	6.7	5.9
5	산업기계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정밀화학제품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철강제품	산업기계
	3.9	6.6	2.6	1.4	6.1	4.5	5.5	5.5
6	산업용전자제품	직물	산업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기초산업기계	석유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광물성연료
	3.3	4.0	2.1	1.4	4.6	3.9	4.8	5.0
7	정밀화학제품	산업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산업기계	산업용전자제품	가정용전자제품	산업용전자제품	석유화학제품
	3.0	3.8	1.9	1.3	4.2	3.5	2.8	3.6
8	비철금속제품	비철금속제품	기초산업기계	전자부품	전자부품	기초산업기계	고무제품	기초산업기계
	2.1	2.8	1.1	1.0	3.8	3.4	2.1	3.5
9	고무제품	산업기계	산업기계	기계요소	정밀화학제품	산업기계	요업제품	가정용전자제품
	2.1	2.8	0.7	0.8	3.1	3.3	1.9	3.3
10	요업제품	정밀화학제품	정밀화학제품	가정용전자제품	충전기	기계요소	직물	고무제품
	1.7	2.5	0.7	0.8	3.1	2.3	1.3	3.1

(3) 한국의 FTA 발효 국가별 수입 현황

2012년 한국의 FTA 발효 국가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우리나라 수입금액 대비 아세안(10.0%), EU(9.7%), 미국(8.3%)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로 인해 인도 및 페루의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크게 감소하였다.

< 표 2-5 > 한국의 FTA 체결국별 수입현황

(단위 : 천만 달러, %)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률
전체*	금액	22,446	26,124	30,938	35,685	43,527	32,308	42,251	52,441	51,958	-0.9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칠레	금액	193	228	381	418	413	310	422	486	468	-3.9
	비중	0.9	0.9	1.2	1.2	0.9	1.0	1.0	0.9	0.9	
ASEAN	금액	2,238	2,606	2,974	3,311	4,092	3,405	4,410	5,312	5,198	-2.2
	비중	10.0	10.0	9.6	9.3	9.4	10.5	10.4	10.1	10.0	
싱가포르	금액	446	532	589	686	836	787	785	897	968	7.3
	비중	2.0	2.0	1.9	1.9	1.9	2.4	1.8	1.7	1.9	
EFTA	금액	179	182	220	355	414	455	570	518	771	32.9
	비중	0.8	0.7	0.7	1.0	1.0	1.4	1.3	1.0	1.5	
인도	금액	185	211	364	462	658	414	567	789	692	-14.1
	비중	0.8	0.8	1.2	1.3	1.5	1.3	1.3	1.5	1.3	
EU	금액	2,419	2,730	3,006	3,682	3,998	3,223	3,872	4,742	5,037	5.9
	비중	10.8	10.5	9.7	10.3	9.2	10.0	9.1	9.0	9.7	
페루	금액	28	25	68	104	90	92	104	195	164	-19.0
	비중	0.1	0.1	0.2	0.3	0.2	0.3	0.2	0.4	0.3	
미국	금액	2,878	3,059	3,365	3,722	3,836	2,904	4,040	4,457	4,334	-2.8
	비중	12.8	11.7	1.9	10.4	8.8	9.0	9.5	8.5	8.3	

* 전체 : 우리나라 전체 수입

(4) 한국의 FTA 발효 국가별 주요 수입 품목 현황

FTA 발효 국가별 2012년 주요 수입 품목은 ASEAN(40.2%), EFTA(31.3%), 인도(54.6%)등 전체적으로 광물성 연료의 수입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입 전체 금액에서 전자부품 및 금속광물의 수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표 2-6 > 2012년 한국의 FTA 발효 국가별 주요 수입 품목 현황

(기준 : MTI 2단위, 단위 : %)

순위	칠레	ASEAN	싱가포르	EFTA	인도	EU	페루	미국
1	금속광물	광물성 연료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광물성 연료	수송기계	금속광물	전자부품
	40.8	40.2	41.9	31.6	54.6	13.7	87.1	11.3
2	비철금속 제품	전자부품	광물성 연료	산업기계	농산물	정밀화학 제품	수산물	수송기계
	39.0	14.7	16.4	8.1	9.2	10.7	4.8	10.3
3	제지원료, 종이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기초산업 기계	철강제품	광물성 연료	비철금속 제품	농산물
	5.6	5.5	9.8	8.1	6.1	10.2	4.0	9.8
4	농산물	농산물	정밀기계	정밀화학 제품	비철금속 제품	기초산업 기계	농산물	정밀화학 제품
	5.1	5.0	9.1	7.6	5.8	6.6	3.2	8.5
5	축산물	섬유제품	석유화학 제품	정밀기계	정밀화학 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섬유제품	정밀기계
	2.9	4.2	7.3	6.3	5.7	6.6	0.4	7.4
6	수산물	임산물	정밀화학 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석유화학 제품	산업기계	정밀화학 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2.4	4.0	5.1	5.1	3.3	5.5	0.2	7.2
7	정밀화학 제품	석유화학 제품	비철금속 제품	중전기	섬유사	철강제품	섬유사	석유화학 제품
	2.2	3.0	1.4	5.1	2.9	4.5	0.1	6.4
8	임산물	비철금속 제품	플라스틱 제품	금속광물	금속광물	기계요소	직물	기초산업 기계
	1.7	3.0	1.0	4.7	1.0	4.2	0.1	4.3
9	철강제품	정밀화학 제품	산업기계	수송기계	섬유제품	정밀기계	축산물	철강제품
	0.3	2.9	0.9	4.4	0.8	4.2	0.0	4.1
10	비료	정밀기계	농산물	기타 기계류	수송기계	중전기	임산물	축산물
	0.1	2.1	0.8	3.6	0.8	3.9	0.0	3.9

2.3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⁹⁾

2.3.1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요

FTA 체결이 점차 확산되면서 체결국 간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완화 또는 제거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 기회가 많아지고 있으나,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해 수출기업이 FTA 체결효과를 누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FTA 체제하에서 우리 기업들이 FTA를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별로 원산지 규정 등 협정 내용을 분석하고 원재료 공급에서부터 제품 생산 및 수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FTA 적용방안을 제시해주는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제공하여 FTA 시대에 기업들의 새로운 수익창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이란 수출자 등이 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 FTA별 원산지 규정 및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원재료 구입, 중간재의 조달 및 생산 그리고 해외수출에 이르기까지 FTA별 특혜요건을 가장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FTA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관세특혜 및 이윤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와 과정을 지원하는 FTA 환경의 수출기업지원 사업모델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이 단순히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FTA 네트워크, 원가관리 등 보다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개별 업체에 맞게 적용하여 모든 과정에서 원가절감, 이윤확대 및 보유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출전략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비

9) 성윤갑, 2007.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P.593-602.

즈니스 기회를 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FTA 체결국 시장을 공략하는 등 FTA를 통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여야 하겠다.

2.3.2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주요 고려사항¹⁰⁾

기업에서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수출전략을 수립함에 앞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첫째, 대상국가 및 품목을 선정해야 한다. 해당기업에서 수출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 중인 국가의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FTA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에 해당되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해당물품의 협정관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관세율은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통 체결국간 상품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대부분의 상품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결국간의 합의에 따라서 일부 품목에 한해 양허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점진적으로 관세를 낮추어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수출시 해당물품이 상대국에서 관세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전에 확인해 보아야 한다.

셋째, 원산지 결정기준을 분석해야 한다.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체결국간 FTA 특혜관세가 WTO 협정관세율보다 낮아 역외에 대한 관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역외제품이 역내 저 관세국을 통해 역내 고 관세국으로 수입되는 현상인 무역굴절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체결국간 협상을 통해 별도로 원산지 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협정관세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충족방안을 강구하여 FTA를 활용하여야 하겠다.

이 밖에도 FTA 체결에 따라 관세율이 인하되더라도, 상대방 혹은 제3국의 기업 경쟁력이 강하여 관세율 인하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가 어려운 경

10) 이성임, 2010. *FTA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수출 전략, 석사학위 논문*, 부경대학교, pp.60.

우가 있으므로 자사제품이 경쟁하는 시장에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3.3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유형¹¹⁾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은 FTA 상대국 관세인하를 활용한 수출모델, 상대국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모델, FTA 체약국으로부터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원가절감형 모델 등에서부터 최소기준, 누적기준 등 원산지 규정을 활용한 모델, 품목분류 컨설팅을 통한 수출지원 모델, 우리나라 FTA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FTA 허브형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표 2-7>과 같다.

<표 2-7>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주요 FTA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요 및 특징	
I. FTA 특혜관세 혜택 활용 모델	① FTA 상대국 관세인하를 활용한 수출모델
	② 상대국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모델
	③ FTA 관세혜택을 활용한 완제품 수입선 전환모델
II. FTA 원산지 규정 활용 모델	④ 누적기준을 이용한 모델
	⑤ 미소기준을 이용한 모델
	⑥ 중간재기준을 이용한 모델
	⑦ 세트물품 원산지 규정을 이용한 모델
	⑧ 특정공정기준 충족을 위한 거래선 전환 모델
III. 품목분류 활용 모델	⑨ 품목분류 컨설팅을 통한 수출 지원형 모델
IV. FTA 허브 모델	⑩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모델

11) 손수석, 최명국, 2011.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한-EU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pp.53-79.

① FTA 상대국 관세인하를 활용한 수출모델

FTA체결 이전에는 관세를 부과하던 물품에 대하여 FTA 체결 이후 상대국에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상대국에 대한 수출가격이 낮아짐으로써 수출을 증대하는 형태이다. 즉, 상대국의 관세인하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모델로 업체의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무역환경이 조성된다.

② 상대국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모델

제3의 국가가 체결하고 있는 또 다른 FTA를 활용하여 제3국의 체결국에 무관세로 수출하는 모델이다. 즉,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외에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에 유리한 모델이다.

③ FTA 관세혜택을 활용한 완제품 수입선 전환모델

관세 인하 및 철폐를 활용하여 기존에 FTA 미체결국에서 수입하던 것을 FTA 체결국으로 거래선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다. 즉, 우리나라의 관세율 인하 및 철폐를 활용하기 위한 모델이다.

④ 누적기준을 이용한 모델

FTA 체결국 내 여러 나라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모두 자국산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 계산 시 원산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모델로 역내 회원국 중 가장 저렴한 국가에서 원재료 구매 및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며, 여러 나라 재료비를 합산함으로써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하다.

⑤ 미소기준을 이용한 모델

일반적으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의 보충적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비역내산 원재료를 이용한 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이 모델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인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FTA 적용을 받을 수 있다.

⑥ 중간재기준을 이용한 모델

생산자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재를 생산할 경우, 그 중간재가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생산에 투입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도 국산으로 간주하는 모델이다.

⑦ 세트물품 원산지 규정을 이용한 모델

수출품이 세트물품인 경우 그 세트를 구성하는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격이 세트가격의 일정비율 이하인 경우 세트 전체를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하는 모델로 문구류나 미용물품 등과 같이 주로 세트로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효과적인 모델이다.

⑧ 특정공정기준 충족을 위한 거래선 전환 모델

화학제품 및 섬유 등 특정공정기준을 요구하는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에 수입하거나 해외에서 생산하던 공정을 국내조달 및 생산으로 변경하여 적용하는 모델이다.

⑨ 품목분류 컨설팅을 통한 수출 지원형 모델

품목분류 오류로 수출시 FTA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수출을 지원하는 모델로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이다.

⑩ 수출입 쌍방향 FTA 활용모델

지금까지 우리나라 체결된 FTA를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모델로 FTA 체결국가에서 무관세로 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가공 후 다른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모델이다. 즉 최초 원재료 수입부터 최종 제품 수출까지 무관세 무역이 가능하다.

제 3 장 한-미 FTA 원산지규정

3.1 한-미 FTA 개요

3.1.1 한-미 FTA 의의

한-미 FTA는 지난 2006년 2월 2일 공식적으로 협상개시를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4여년이 지난 2012년 3월 15일자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다. 동 협정은 광범위한 무역협정으로 물품과 용역의 국제거래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제거함에 따라 무역개방을 통해 생산성 및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한국과 미국 간에 경제적 유대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표 3-1> 한-미 FTA 도입 일지

일 자	내 용
○ 2003. 8.	'FTA 추진 로드맵' 마련
○ 2005. 9.	미 행정부, 한국 등 4개국을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
○ 2006. 2. 3.	한-미 FTA 추진 발표(워싱턴 미 상원의사당)
○ 2006. 6. 5~9.	한-미 FTA 제1차 공식협상 개최(워싱턴)
○ 2007. 4. 2.	한-미 FTA 협상타결
○ 2007. 6. 30.	한-미 FTA 공식 서명(워싱턴)
○ 2007. 9. 7.	한-미 FTA 비준동의안 17대 국회 제출
○ 2009. 4. 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통과
○ 2010. 12. 3.	한-미 FTA 쟁점 현안 최종 타결
○ 2011. 10. 12.	한-미 FTA 미 의회 통과
○ 2011. 11. 22.	한-미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 2012. 3. 15	한-미 FTA 발효

자료 : FTA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http://www.ftahub.go.kr/kr/>) 참조

한-미 FTA 발효는 쌀을 제외한 상품, 서비스, 농산물에 이르는 모든 분야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보험, 금융, 노동, 환경정책과 같은 중요 분야에서 투자정책, 지적재산권, 서비스 자유화 의무가 포함되어 무역자유화의 범위와 깊이 면에서 전례 없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산품과 농축수산물 등 양국 간 모든 교역물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며, 갑작스런 관세 철폐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고자 양국 간 교역품의 85%만 즉시 철폐하고 나머지 제품도 일정한 기간을 거쳐 12년 내에 철폐된다.¹²⁾

대부분의 품목이 조기 철폐(즉시 혹은 3년 이내 철폐)되지만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과 관계없이 발효 후 4년간 2.5%의 관세를 유지하고, 트럭은 향후 7년간 25%로 관세를 유지하고 8~10년째부터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국 측의 민감 품목인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는 1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된다.

<표 3-2> 한-미 FTA 관세 양허 스케줄

(단위: 개, %, 억 달러)

구분	한국				미국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품목수	비중	수입액	비중	
즉시철폐	7,218	85.6%	200.0	80.6%	6,176	87.0%	331.0	87.2%	
3년균등	719	8.5%	33.2	13.4%	360	5.1%	28.2	7.4%	
5년균등	168	2.0%	3.8	1.5%	196	2.8%	8.7	2.3%	
10년	균등	301	3.6%	10.7	4.3%	333	4.7%	11.5	3.0%
	비선형	24	0.3%	0.3	0.0%	12	0.2%	0.1	0.0%
12년	비선형	1	0.0%	-	0.0%	17	0.2%	0.02	0.0%
	TRQ	2	0.0%	0.03	0.0%				
15년(TRQ)	1	0.0%	0.04	0.0%					
총계	8,434	100%	248.4	100%	7,094	100%	379.6	100%	

자료 : FTA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http://www.ftahub.go.kr/kr/>) 참조

12) 김광열, 2012.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활용전략 및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pp.9-10.

3.1.2 한-미 FTA 협정 구성¹³⁾¹⁴⁾

한-미 FTA 협정문은 정식 국문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자유무역협정’으로, 일반적인 FTA 협정문과 유사한 형태로 서문(Preamble), 협정 본문(Chapter), 부속서(Annex), 부록(Appendix), 서한(letter)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3> 한-미 FTA 구성요소별 주요 내용

구성 요소	주요 내용
서문 (Preamble)	협정 체결의 일반적인 목적을 선언적으로 규정
장 (Chapter)	분야별로 Chapter를 분류하여, 양측 간 합의 내용을 협정 본문에 규정
부속서 (Annex)	관세양허안 또는 서비스 유보안처럼 분량이 방대하거나, 협정문 본문에 두는 것이 적절치 않은 특정 분야의 합의 내용을 규정
부록 (Appendix)	부속서에 딸린 부록은 부속서 내용 중에서도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세부내용을 규정
서한 (letter)	협정 내용 중 해석상 이해가 다를 경우를 대비하여, 협상과정에서 합의한 해석내용 또는 협상과정의 논의 내용을 확인하는 서한 형태의 문서

자료 : 외교통상부, 2007.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서문은 협정의 기본정신 및 원칙에 대한 선언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정의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각 장은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장은 양국이 합의한 협상 분야별 일반원칙이 들어가는데, 크게 상품분야, 투자·서비스분야, 무역규범분야로 나눌 수 있다. 제1장 최초 규정 및 정의 조항에 이어서 협정 제2장부터 제10장까지는 상품분야에 대한 내용

13) 한국무역협회, 2007. *한-미 FTA 100% 활용하기*, pp. 31-82.

14) 외교통상부, 2011.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원산지기준, 통관행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1장부터 제15장까지는 투자·서비스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6장부터 제22장까지는 노동, 환경 투명성, 제도규정 및 분쟁 해결 등 무역규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제23장 예외조항과 제24장 최종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간략하게 각 장별로 제목만 정리하면 <표 3-4>와 같다.

<표 3-4> 한-미 FTA 협정문 각 장(Chapter) 제목

구분	제목	비고
제 1 장	최초규정 및 정의	-
제 2 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상품분야
제 3 장	농업	
제 4 장	섬유 및 의류	
제 5 장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 6 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제 7 장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제 8 장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 9 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제 10 장	무역구제	
제 11 장	투자	
제 12 장	국경 간 서비스무역	
제 13 장	금융서비스	
제 14 장	통신	
제 15 장	전자상거래	
제 16 장	경쟁 관련 사안	무역규범 분야
제 17 장	정부조달	
제 18 장	지적재산권	
제 19 장	노동	
제 20 장	환경	
제 21 장	투명성	
제 22 장	제도 규정 및 분쟁해결	
제 23 장	예외	-
제 24 장	최종 규정	-

서문과 각 장이 한-미 FTA의 기본원칙, 핵심내용, 관련정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부속서, 부록, 서한은 내용이 방대하여 본문에 담지 못하는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거나, 협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위해 사용되며, 특정 통상 사안들에 대한 양국 간의 약속이나 합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1.3 한-미 FTA 발효 후 대미 교역 현황¹⁵⁾¹⁶⁾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1년간('12.3.15 ~ '13.2.28) 대미 교역 현황을 살펴보면 대미 교역액은 96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2% 감소한 바, 이는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 교역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역수지는 수출 증가, 수입 감소에 따라 흑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한-미 FTA 발효 후 교역현황('12.3.15 ~ '13.2.28)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구 분	교 역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對 세 계	10,266(△2.9)	5,310(△2.3%)	4,956(△3.8%)	353(26.6%)
對 미 국	969(△3.2)	570(1.4%)	399(△9.1%)	172(39.1%)
	(혜택품목)	224(10.4%)	207(4.1%)	
	(비혜택품목)	346(△3.6%)	191(△20.1%)	

수출의 경우는 유럽재정위기로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FTA 혜택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증대 효과를 시현하여 동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對세계수출)이 2.3% 감소한 것과는 달리, 대미 수출은 1.4%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동 기간 대미 수출부문의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FTA 혜택품목군 가운

15) 명진호 외, 2013. *한-미 FTA 1주년 평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p.5-7.

16) 관계부처합동, 2013. *한미 FTA발효 1년간 주요성과*, pp. 1-5.

데 특히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등의 수출이 10.4% 정도 크게 증가 하였으며, FTA 비혜택 품목군 가운데서는 자동차와 철강제품의 수출은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등 FTA 발효 전부터 무관세를 적용받는 IT 제품의 수출은 감소하였다.

수입 부문에서는 FTA 비혜택 품목 수입의 감소가 혜택 품목에 비해 매우 커 대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9.1% 감소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체 수입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대미 수입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동 기간 대미 수입부문의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FTA 혜택품목군은 자동차, 오렌지 등의 수입이 4.1% 증가한 반면 반도체, 항공기 및 부품, 반도체 제조용 장비, 철강제품 등 FTA 비혜택 품목군 대부분의 수입이 20.1%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대미 10대 수출품목('12.3.15 ~ '13.2.28)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순위	품 명	비중	對미		對 세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자동차	18.8%	107.5	16.9%	459.8	△0.3%
2	무선통신기기	9.8%	55.9	△35.2%	228.5	△7.7%
3	자동차부품	9.7%	55.3	10.9%	241.3	6.0%
4	석유제품	5.6%	31.7	29.3%	545.0	3.9%
5	반도체	4.2%	24.1	△7.7%	489.7	1.1%
6	철강관·선	3.4%	19.6	10.1%	51.3	△4.3%
7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3.1%	17.8	23.9%	356.8	△33.1%
8	고무제품	3.0%	16.9	3.1%	53.7	3.8%
9	컴퓨터	2.5%	14.4	△5.4%	81.9	△8.0%
10	원동기및펌프	2.3%	13.1	4.0%	69.7	3.9%

<표 3-7> 대미 10대 수입품목('12.3.15 ~ '13.2.28)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순위	품 명	비중	對미		對 세계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1	반도체	10.3%	40.9	△0.7%	309.0	△0.8%
2	항공기및부품	6.4%	25.4	△17.5%	31.3	△33.3%
3	반도체제조용장비	5.3%	21.0	△32.2%	70.7	△35.5%
4	식물성물질	3.7%	14.9	△31.8%	65.7	7.70%
5	곡실류	3.5%	14.1	△9.5%	44.0	0.60%
6	계측제어분석기	3.4%	13.6	8.70%	57.0	5.30%
7	원동기및펌프	2.9%	11.6	△2.7%	66.0	5.00%
8	합금철선철및고철	2.6%	10.2	△30.6%	70.4	△10%
9	육류	2.5%	10.1	△21.8%	29.0	△19.4%
10	정밀화학원료	2.5%	9.9	0.70%	84.4	△1.9%

3.2 한-미 FTA 원산지 규정과 특징

3.2.1 한-미 FTA 원산지 규정 개요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전적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둘째, 전적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고,

- ①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4-가(섬유 및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 ② 상품이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속서 4-가(섬유 및 의류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역내가치포함 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 ③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셋째,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동 협정 제 6.1조에 의하면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규정한다.”고 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¹⁷⁾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은 제6장으로 된 협정 본문의 일반규정과 제6장의 부속서 6-가로 된 품목별 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 그리고 제4장으로 된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원산지 일반규정과 부속서 4-가, 4-나로 된 품목별 기준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17) 성윤갑, 2007.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P.315.

한-미 FTA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주요 특징으로는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세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기준이 많다는 점이다. 섬유 및 의류 품목에 총 10.3%를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세번변경도 HS¹⁸⁾ 2단위인 류의 변경을 전제로 하여 원산지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둘째,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혼합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의 세번은 품목에 따라 2단위의 류, 4단위의 호, 6단위의 소호의 변경을 각각 기준으로 하되 여기에 일정한 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추가될 것을 요건으로 정해 두었다. 이러한 기준은 주로 품목번호 제85류의 전기기기, 제87류의 차량, 제89류의 선박과 수상구조물, 제90류의 정밀기기, 제91류의 시계, 제96류의 잡품에서 규정되어 있다.

셋째, 섬유 및 의류에 대하여 별도의 원산지 기준을 두고 있다. 섬유 및 의류 상품은 품목번호 제42류의 여행용가방, 제50류 내지 제63류의 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 제70류의 유리 및 유리제품, 제94류의 잡품에 적용한다.

한-미 FTA의 이와 같은 원산지 규정은 미국이 우리나라의 가공무역구조를 의식하여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3.2.2 완전생산기준

다른 국가의 원재료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상품의 전 생산과정이 원산지 국가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동물, 식물, 광물 등 천연산품의 생산·획득이나 그것만으로 하나의 국가에서 제조된 상품에 적용된다.

18) HS협약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조화(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관한 국제협약의 줄임말로,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를 말한다. HS 협약상 HS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동일하며, HS 7단위부터는 각 계약국의 자율에 의하여 운용된다.

한-미 FTA에서는 <표 3-8>와 같은 물품에 대해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 표 3-8 > 한-미 FTA 완전생산기준 규정

연번	구분	원산지 인정대상
①	광물성 제품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으로부터 추출되거나 채취된 식물성제품 산 동물, 동물성제품, 또는 수렵이나 낚시 및 어획물에 해당되지 않는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②	식물성 제품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되고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 및 식물생산물
③	산 동물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④	동물성 제품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⑤	수렵·낚·사냥, 어로 또는 양식 수산물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된 수렵·낚·사냥, 어로 또는 양식으로로부터 획득된 상품
⑥	영해 밖 어획물	어느 한 쪽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밖의 바다.해저 및 하부토양에서 잡힌 어류, 패류와 그 밖의 해양생물
⑦	영해 밖 어획물의 가공품	⑥에 규정한 영해 밖의 어획물로부터 가공 선박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러한 가공선박은 그 당사국에 등록되거나 등기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하여야 함
⑧	영해 밖 해양토양 및 하부토양 획득물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밖의 해저 또는 하부 토양으로부터 당사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 의해 채취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은 그러한 해저나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⑨	폐기물 및 부스러기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가.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나.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 상품은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함
⑩	중고상품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중고 상품으로부터 파생되고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재제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생상품
⑪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당사국 사람에게 의해 획득되고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가공되지 않아야 함
⑫	기타	모든 생산단계에서 위에 규정된 상품 또는 그 파생상품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표 3-8>에서 확인 되는 바, 한-미 FTA에서는 우리나라나 미국 중 어느 한 나라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뿐 아니라 양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했다.

또한 한-미 FTA는 1차산품에 대해서 당사국 역내에서 완전생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한-EU,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FTA와는 달리,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페루 FTA의 경우와 같이 어느 한 당사국 뿐 아니라 양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는 1차산품 내지 이를 이용한 생산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문에서의 교역 원활화에 기여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 3-8>의 연번 ④에서 산 동물로부터 획득되는 상품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서 당사자 내에서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제품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한 것과는 당사국내에서 달리 사육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다. 이는 이를테면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사육된 소를 미국으로 수입하여 도축할 경우에도 그 쇠고기의 원산지

를 미국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¹⁹⁾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큰 차이가 나는 점이다.

<표 3-8> 연번 ⑥에서 등기와 국기 계양 요건은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페루 등과 체결한 FTA의 내용과 일치하지만, 영해의 경우 칠레 및 인도와의 FTA에서 EEZ를 영해로 포함한 것과는 달리 다른 FTA에서와 같이 영해 범위에 EEZ는 포함되지 않는다.

<표 3-8> 연번 ⑩에서 재생상품(recovered goods)이란 중고품을 개별 부품으로 해체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로 개선하기 위하여 세척, 검사, 테스트 또는 그 밖의 공정을 거친 부품형태의 재료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는 없는 규정이다.

<표 3-8> 연번 ⑪의 우주에서 취득한 상품은 우리나라가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과 체결한 FTA와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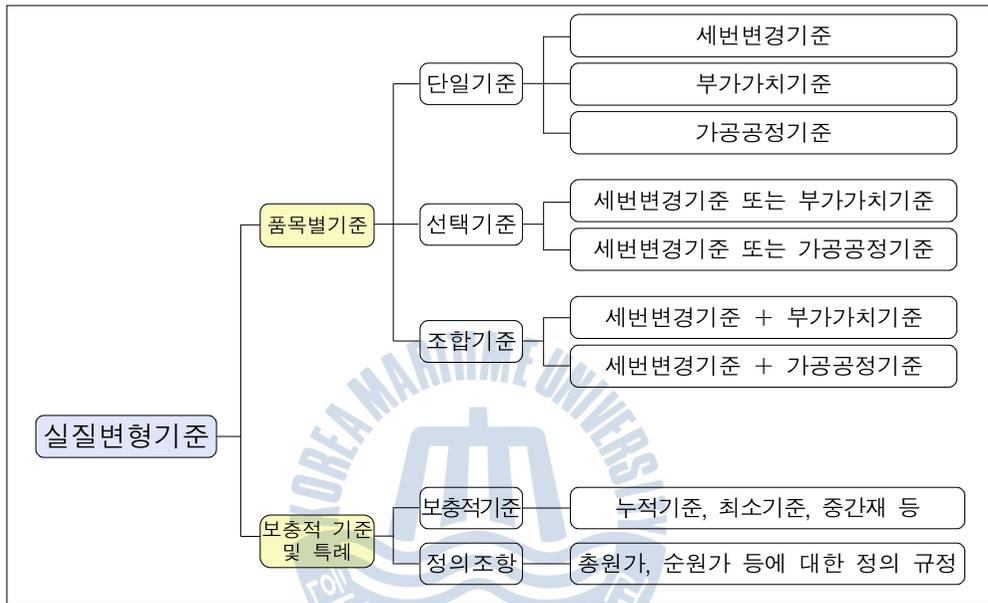
<표 3-8> 연번 ⑫에서 파생품(derivatives)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아세안, 인도, EFTA, EU와의 FTA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것이고, 한-미 FTA에도 별도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에 있어 일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2.3 실질적변형 원산지기준

해당물품이 둘 이상의 국가에서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실질적변형 기준에 의해 원산지를 결정한다. 실질적변형 기준은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6-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두고 있으며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단순한 작업 또는 공정으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 불인정 공정이 적용된다.

19)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는 동물의 도살을 불인정공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한-미 FTA에서는 일반기준으로 불인정공정에 대해 규정한 바가 없고, HS 제02류나 제05류의 품목별 기준에서도 2단위의 세번변경기준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동물 도축의 경우에도 HS 제01류가 제02류 및 제05류로 변경되어 도축 국가가 원산지가 된다.

품목별 기준은 다시 HS별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제도가공공정 기준 및 조합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정 세번에서의 변경, 서로 다른 부가가치 비율 등 모두 따로 분류할 경우 총 79가지의 서로 다른 원산지 결정기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료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2011, *한-미 FTA 활용 매뉴얼*, 관세청.

<그림 3-1> 한-미 FTA 원산지 결정상 실질적변형기준 체계

(1) 세번변경기준과 특징

세번변경기준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우 수입원료의 세번과 제품의 세번이 일정단위 이상 변경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이다.

한-미 FTA의 원산지기준에서 세번변경기준은 HS 2단위, 4단위, 6단위 변경기준을 모두 사용하고 있으나 주로 2단위와 4단위 변경이 사용되며, 동일한 류 내에서도 품목에 따라 변경 기준단위가 달라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2단위 변경을 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살아있는 동식물과 식품류 및 섬유 및 의류의 경우인 바, 섬유 및 의류의 경우 HS 제50류 내지 제60류의 섬유류에 대해서는 2단위 또는 4단위 변경만을 기준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HS 제61류 내지 제 63류의 의류에 대해서는 세번변경에 더해 특정한 가공공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HS 제42류의 가방류에 대해서도 또한 동일하다.

한편, HS 제85류와 제87류, 그리고 제90류의 경우 세 번변경기준 뿐 아니라 부가가치기준을 추가한 복합기준으로 규정한 경우가 많다. 이들 산업은 우리나라가 미국과 경쟁 관계에 놓인 품목이 상당한데, 가공 산업구조인 우리나라가 원산지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게 세번변경기준에 부가가치기준을 복합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 세번변경기준을 규정한 내용을 보면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가공무역구조임을 감안하여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 부문인 섬유 및 의류와 전자제(부)품, 자동차(부품) 등의 품목에서 상당한 정도의 국내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가 인정되기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향후 미국 측의 원산지검증이 이 부분에서 적지 않게 시도될 것으로 추정된다.

(2) 부가가치기준과 특징

부가가치기준은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경우 가공과정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부가가치의 유형으로는 역내부가가치비율과 비원산지재료 가치비율이 있으며, 역내부가가치비율의 경우 부가가치비율의 산출방법에 따라 제품 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공제하는 공제법,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직접 산출하는 집적법 및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부가가치로 파악하는 순원가법 등이 있다. 이 중

순원가 방식은 순원가를 계산해 내기가 쉽지 않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적인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에서 부가가치기준은 소수의 품목에 단독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세번변경기준과 복합적인 기준으로 적용되며, 부가가치기준의 산정방식은 일반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계산방식으로는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를 공제하는 공제법, 원산지재료의 가격을 직접 산출하는 집적법, 그리고 제품의 순원가에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부가가치로 파악하는 순원가법 등을 사용한다. 부가가치기준은 <표 3-9>와 같은 형태로 규정된다.

< 표 3-9 > 한-미 FTA 원산지규정의 부가가치기준 규정방법과 적용 사례

구분	규정방법	적용사례
①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의 중량 또는 부피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을 요구	예 1) HS 1302.39호(식물성 수액과 액스) : 비원산지재료가 중량으로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예 2) HS 2106.10(혼합주스) : 하나의 비당사국에서 제조된 단일 과일 또는 채소주스 또는 주스 성분(들)이 원액으로 그 상품의 부피를 기준으로 60% 이하로 구성된 것
②	역내 부가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요구	예 1) HS 8482.10(볼 베어링) : 집적법 40% 이상 또는 공제법 50% 이상 예 2) HS 8708.31(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 집적법 35% 이상 또는 공제법 55% 이상 또는 순원가법 35% 이상

한-미 FTA에는 <표 3-9>의 ①과 같이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 또는 부피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것으로 규정하면서 직접 그 율을 정한 경우는 HS 제13류와 제20류의 극히 일부 품목에 불과하고 그 외는 모두 ②의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3-9>의 ②와 같은 부가가치 산정기준을 정해두고 수출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한 경우는 <표 3-10>와 같이 여러 조합형태가 있다.

< 표 3-10 > 한-미 FTA에 규정된 부가가치산정 기준의 선택적 적용방법

구분	선택기준의 조합	적용 사례
①	- 집적법 30% 이상 - 공제법 35% 이상	예 1) HS 8534(인쇄회로) 예 2) HS 8541.10(다이오드)
②	- 집적법 30% 이상 - 공제법 40% 이상	예 1) HS 9101.11(고급 팔목시계) 예 2) HS 9104(차량용 시계)
③	- 집적법 35% 이상 - 공제법 45% 이상	예 1) HS 8443.11(읍셋 인쇄기) 예 2) HS 8516.80(전열용 저항체)
④	- 집적법 40% 이상 - 공제법 50% 이상	예 1) HS 8483.40(기어와 기어링) 예 2) HS 8709.11~19(하역 또는 권양용 차량)
⑤	- 집적법 35% 이상 - 공제법 55% 이상 - 순원가법 35% 이상	예 1) HS 8409(제8407호 또는 제8408호 내연기관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예 2) HS 8703(승용자동차)

그리고 각 부가가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에 따라 산정된다.

① 공제법(Build-down Method)

$$\text{역내부가치포함비율(RVC)}^{20} = \frac{\text{조정가치(AV)}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조정가치}} \times 100$$

20) 역내가치 포함비율은 백분율로 표시된 역내가치 포함비율이며, 비원산지재료가치는 생산자가 획득하여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재료 이외의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다. 비원산지재료의 가치는 자가생산된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원산지재료가치는 생산자가 획득하거나 자가생산하고 상품의 생산에 사용한 간접자료 이외의 원산지재료의 가치다.

② 집적법(Build-up Method)

$$\text{역내부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조정가치}} \times 100$$

③ 순원가법(Net Cost Build-up Method : 자동차 제품용)²¹⁾

$$\text{역내부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순원가(NC)²²⁾$$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조정가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규정한 방법에 의한 가치를 의미하는데, 필요한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수입국까지 제품의 국제수송에 수반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부과금, 또는 경비를 제외하기 위하여 조정된 가치를 말한다.

이 가치는 미국이 수입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기준과 동일한 것이 되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운송과 관련해 발생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을 공제해야 동일한 것이 된다.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은 매입경로별로 규정하는 방식과 원산지재료의 지위별로 규정하는 방식, 그리고 이 양자를 혼합하는 방식이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매입경로별로 규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또한 수입재료에 대해서는 관세평가협정에 의해 결정되는 가격으로 하

21) HS 8407.31호 내지 8407.34호(엔진), HS 8408.20호(자동차를 위한 디젤엔진), HS 8409호(엔진부품), HS 8701호 내지 8705호(자동차), HS 8706호(샤시), HS 8707호(차체) 및 HS 8708호(자동차 부품)에만 적용된다. 한-미 FTA제 6.2조 제 3항 참조.

22) 순원가란 총비용에서 총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관측,마케팅,판매후서비스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그리고 허용되지 않는 이자비용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순원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한-미 FTA 6.22 정의 규정 참조.

되 국제운송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하여 산출하고, 국내에서 조달하는 재료는 실제 지급금액으로 산출하고, 그 외 외국 또는 국내에서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입수하거나 자사에서 직접 생산한 재료는 생산 제비용에 이윤을 가산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한-미 FTA에는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와 달리 경로별 재료비 계산기준 외에 별도의 가산요소 규정을 두어 경로별로 계산한 재료비에 다음 금액이 있을 때 이를 추가하여 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는 집적법을 사용하여 계산할 경우 그만큼 더 원산지 인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로 귀착된다.

- ①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간에 생산자의 소재지로 재료를 운송하는데 발생한 화물비, 보험료, 포장비 및 그 밖의 모든 비용
- ②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관세 또는 조세에 대한 공제를 포함하여 면제·환급·환급 가능하거나 달리 회수 가능한 관세 및 조세 이외의 것으로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영역에서 납부된 재료에 대한 관세, 조세 및 통관증개수수료
- ③ 상품의 생산에 있어 그 재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과 손상물의 비용에서 재활용될 수 있는 부스러기나 부산물의 가치를 차감한 비용

(3) 가공공정기준과 특징²³⁾

가공공정기준이란 각 품목별로 주요 생산 공정을 지정하고, 그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을 원산지로 결정하는 기준을 말하며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기준에 비해 적용되는 품목이 적다.

한-미 FTA에서 가공공정기준은 주로 품목번호 제2710호의 석유와 역청

23) 성윤갑, 2007.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PP.329-331.

유(원유를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 및 웨이스트 오일, 제 28류 내지 제38류의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제39류 내지 제40류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 및 고무와 그 제품, 제7308호 철강제의 구조물의 경우 화학 반응, 정제, 표준물질, 분리 금지 등 특정한 공정을 거쳐 생산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표 3-11 > 한-미 FTA에 규정된 가공공정기준

품목	주요 가공공정기준
제2710호	화학반응, 상압증류법, 또는 감압증류법
제28류 ~제38류	화학반응, 정제, 혼합, 입자 크기의 변화, 표준물질생산, 이성체 분리, 분리금지
제39류 ~제40류	화학반응, 혼합, 정제, 입자 크기의 변화, 이성체 분리
제7308호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수행된 드릴링, 천공, 닳칭, 절단, 캠버링 내지 회전공정 ② 철골건축물에 추가되는 부착 또는 용접공정 ③ 취급목적에 위한 부착물 추가공정 ④ 에치형강(H형강) 또는 아이형강(I형강)에 추가되는 용접, 결합 또는 부착공정 ⑤ 도료, 아연도금 또는 기타 방법의 도장공정 ⑥ 기동용으로 적합한 물품 제작을 위하여 개별적 또는 복합적으로 드릴링, 천공, 닳칭 내지 절단 공정을 거친 후 별도의 보강재 없이 단순히 받침용 강판을 추가하는 공정

(4) 섬유 및 의류 원산지 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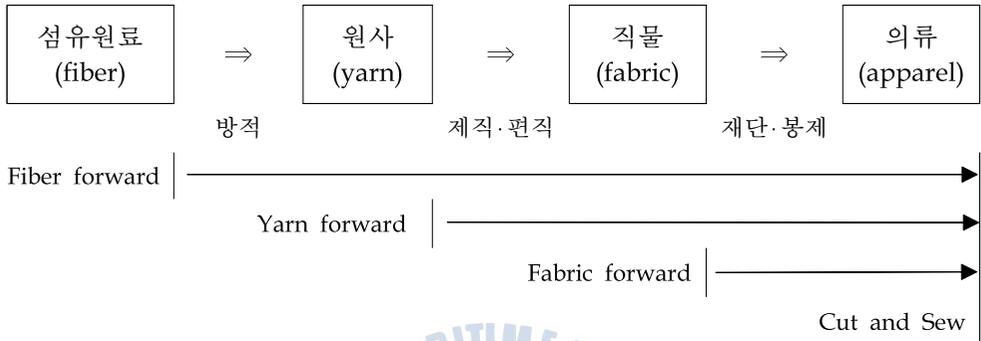
한-미 FTA는 다른 FTA와는 달리 섬유 및 의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제4장(섬유 및 의류)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 제4장에서는 섬유·의류 상품 원산지와 관련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속서 4-가는 개별 섬유·의류 상품별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제4장(섬유 및 의류)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섬유 및 의류 관련 해당범위는 크게 가방류, 섬유·사·직물, 부직포·양탄자·특수직물 등, 편물, 의류, 기타 섬유제품, 유리섬유, 방직용 섬유 관련 잡품으로 구분되며, 한-미 FTA 부속서 4-가에 따르면 섬유 및 의류 원산지 상품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①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생산의 결과로서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가에 명시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에 대하여 세번변경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이 달리 제4장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② 그 상품이 제4장 및 제6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의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한 한-미 FTA에서는 원사기준(Yarn-Forward)을 채택하고 있는데, 원사기준(Yarn-Forward)이란 협정당사국의 원사(실)를 사용하여 직물을 제직 또는 편직하고 직물 및 의류 등 섬유 완제품을 재단·봉제해야만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규정으로 한-미 FTA의 섬유 및 의류분야에 공통기본원칙이다. 즉, 역내에서 만든 실로부터 직물을 만들고 재단·봉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원산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규정으로 NAFTA를 비롯하여 미국이 체결한 FTA에서 주로 사용하는 원산지 규정이다.

그러나 섬유 및 의류 제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 원사기준이 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각 섬유별 공정기준이 혼합되어 있거나 예외규정이 있는 경우²⁴⁾도 있으므로 섬유 및 의류제품에 대한 한-미 FTA에 따른 정확한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자료 : 관세청 FTA집행기획관실, 2011. 한-미 FTA 활용 매뉴얼, 관세청.

<그림 3-2> 한-미 FTA 섬유 및 의류 공정별 원산지 규정

3.2.4 보충적 원산지결정기준

(1) 중간재 기준

한-미 FTA에 의하면 자가생산된 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하며 이러한 자가(自家)생산된 재료의 경우 ①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②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재료의 가치로 인정하도록 하여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중간재의 원산지 인정규정을 주고 있다.

24) 대미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리넨직물, 합섬 여성제킷 및 합섬 남성셔츠 등 33개 품목(HS 코드 10단위 기준)에 대해서는 원사기준의 예외가 적용된다. 또한 부속서 4-나를 신설하여 역내 공급이 부족한 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향후 원사기준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2) 누적기준

누적기준은 우리나라산 재료가 미국에서 어떤 상품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재료를 미국산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한-미 FTA 협정문에서는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울러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생산된 경우에도 그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FTA에서는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이 모두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최소허용기준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만족하지 않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더라도 그 가치가 일정수준 이하이면 그 해당 비원산지 재료를 포함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준으로 한-미 FTA 부속서 6-나(최소허용기준의 예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6-가(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품이라도,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었으며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²⁵⁾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섬유 및 의류상품의 경우 섬유원료 또는 원사의 총 중량이 구성요소 총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상품의 구성요소에 탄성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러한 원산가 일방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하게 형성되고 마무리 된 경우에만 원산

25) 한-미 FTA에서 조정가치(Adjusted Value)란 FOB 수준으로 조정된 가격으로 역내산재료비, 역외산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목표이익, 국내운송비 및 기타 경비가 포함된 가격이다.

지상품으로 간주된다.

한-미 FTA에서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 적용에서 원산지요건을 완화하는 의미가 있으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섬유 및 의류상품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만 인정하여 해당 품목의 원산지 인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다.

(4)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에 대한 원산지 규정

한-미 FTA에서는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호환가능하고 그 특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는 재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각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와 생산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또는 생산국에서 달리 인정되는 평균법, 후입선출법, 선입선출법과 같은 재고관리기법을 사용한 경우여야 해당 물품이 대체가능 상품 또는 대체가능 재료가 원산지 상품이라고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5)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에 대한 원산지 규정

한-미 FTA는 상품과 함께 인도된 표준부속품(standard accessories), 예비부품(spare parts) 또는 공구는 그 상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대상 물품으로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상품에 생산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산지상품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그 부속품과 예비부품, 공구가 그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동일한 송품장으로 거래되며, 수량과 가치가 그 상품에 대해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6) 세트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

세트물품이란 서로 상이한 세번에 해당되는 둘 이상의 물품이 특정 목

적을 위해 하나로 조합한 것으로 한-미 FTA에서 세트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은 일반품목과 섬유관련 품목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일반품목인 경우 품목분류 통칙 3에 의해 세트로 분류되면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에만 그 세트가 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간주하나 예외로서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조정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때는 상품의 세트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섬유품목인 경우에는 그 세트 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상품이거나 세트 내 비원산지 상품의 총 가치가 세트 과세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7) 소매용·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에 대한 원산지 규정

물품의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 및 용기가 품목분류상 해당제품과 함께 분류될 때 해당 제품이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는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해당제품이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포장재료 및 용기의 원산지에 따라 재료비를 산정하여 반영한다. 그러나 수송용 포장재료 및 용기인 경우 원산지 상품을 경정하는데 있어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 표 3-12 > 한-미 FTA 보충적 원산지 규정

관련기준	주요 내용
중간재 기준 (제6.3조)	자가생산된 재료의 경우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 그리고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은 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
누적기준 (제6.5조)	어느 한 당사자의 원산지 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인정
최소허용기준 (제6.6조)	수출물품이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상품의 조정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단, 부속서 6-나를 먼저 적용)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은 제4.2조 제7항 참고
대체가능 상품 및 재료 (제6.7조)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를 물리적으로 분리한 경우나 생산이 이루어지는 당사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재고관리기법으로 관리되는 경우 대체가능한 상품이나 재로로 원산지 인정 * 단, 재고관리기법은 회계연도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
부속품·예비품 및 공구 (제6.8조)	당사국의 물품과 같이 인도되는 상품의 표준 부속품, 예비부속품, 공구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상품과 같이 분류되고 수량과 가치가 통상적인 수준) * 해당물품이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할 경우 고려하지 않음 * 부가가치기준일 경우에는 원산지 또는 비원산지 재료 고려
상품의 세트 (제6.9조)	① HS분류 통칙 3을 적용한 결과 세트 상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세트내의 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그 세트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② 세트의 모든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해당상품의 조정가치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로 인정 * 섬유 또는 의류상품은 제4.2조제8항 적용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제6.10조)	소매판매를 위한 포장에 사용되는 포장재료가 해당 상품과 같이 분류되는 경우는 * 세번변경 기준일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고, * 부가가치 기준일 경우에는 각 경우에 맞게 적용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제6.11조)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는 원산지 상품을 결정하는데 고려하지 않음 * 수송을 위한 포장재료 및 용기 : 운송기간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으로 소매용 포장재료 제외(6.22조 정의)

3.3 한-미 FTA 원산지 증명 및 검증 제도

3.3.1 원산지 증명 제도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통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식은 발급 유형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등 발급권한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발급과 협정에서 정해놓은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수입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하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나뉘는데 한-미 FTA의 경우는 자율발급을 채택하고 있으며, 여타 협정과는 달리 수출자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수입자도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당초 우리 측은 수출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허용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무역업계의 편의 향상 차원에서 수입업체도 원산지증명을 허용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정에 반영하였다. 또한 우리 측에서는 원산지 증명서 서식을 정형화된 서식과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안하였으나, 통관절차 간소화 및 무역활성화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미국 측의 요구를 수용하여 원산지 증명서식은 필수사항만 기재하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하였다.²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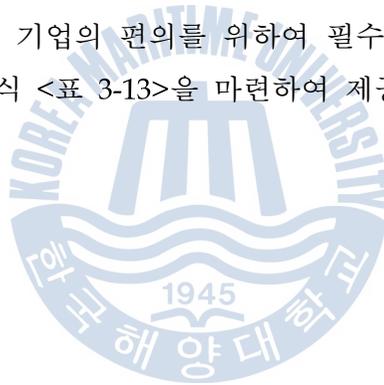
따라서 다른 FTA는 협정에서 지정한 별도의 양식이 있으나, 한-미 FTA는 아래 8가지 필수사항이 원산지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원산지 증명서로서 인정하고 있다.

- ①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②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26) 외교통상부, 2007.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 ③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④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 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⑥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⑦ 증명일, 그리고
- ⑧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분에 대하여 최초 발행한 1건의 원산지 증명서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산지 포괄증명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입 기업의 편의를 위하여 필수 기재 항목 8가지가 포함된 정형화된 권고서식 <표 3-13>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



< 표 3-13 >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권고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YYYY	MM	DD
	Fax (팩스)		(년)	(월)	(일)
	E-mail (전자주소)		From _____ / ____ / ____	To _____ / ____ / ____	
			(부터)		(까지)
3. 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4. Importer (수입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Telephone (전화)	
	Fax (팩스)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E-mail (전자주소)	
5. 원산지 증명 대상 물품 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 · 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gin (원산지 국가)
6. Observations: (특이사항)					
<p>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__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회사명)		
Name: (작성자 성명)			Title (직위)		
YYYY MM DD (년) (월) (일) ____ / ____ / ____			Telephone : (전화번호)		Fax: (팩스번호)

3.3.2 원산지 검증 제도

원산지 검증은 원산지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요건(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증명서류 등)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오류를 바로 잡거나, 위반한 자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불공정무역행위의 방지,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입방지를 통한 국내산업보호, 관세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증대, 역내간 교역과 투자촉진, 상대국의 검증요청 수행을 통한 FTA 이행관리 등을 목적으로 원산지 검증이 이루어진다.

원산지 검증은 검증주체를 기준으로 직접검증, 간접검증 및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이 혼합된 검증 방법이 있다. 직접검증은 수입국의 관세당국이 해외 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 하는 것이고, 간접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의 관세당국이 자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 대한 적정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미 FTA의 경우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섬유·의류의 경우 수출국이 검증을 실시하되 검증과정에서 수입국이 수출국 관세당국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는 등 수출국의 검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섬유·의류 분야의 검증은 수입국이 수입된 섬유·의류 상품의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혜관세대우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입국의 요청이나 수출국 자체 발의에 의해 검증이 수행된다.

또한 섬유·의류 분야의 현지 방문조사는 증거 인멸이나 변경의 위험으로 인해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고 방문시점에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허락을 구하며 수출국은 결론을 뒷받침 하는 모든 문서 및 검증결과에 대한 서면보고서를 검증을 요청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수입국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⁷⁾

2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3.4 한-미 FTA와 원산지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사점

이 장에서는 한-미 FTA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원산지를 충족하기 위한 복잡하고 다양한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한-미 FTA 발효는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보다 미국시장을 안정적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북아에서 가장 먼저 미국과 FTA를 체결함에 따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²⁸⁾

또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와 국가 브랜드 위상 제고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가 용이해지는 등 산업 전반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즉,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우리물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게 되고 한국제품에 대한 수요증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우리기업이 미국시장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으며 FTA 활용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할 수 있다.

그러나 FTA를 활용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에서 수출하는 물품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즉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켜야만 관세 인하 및 철폐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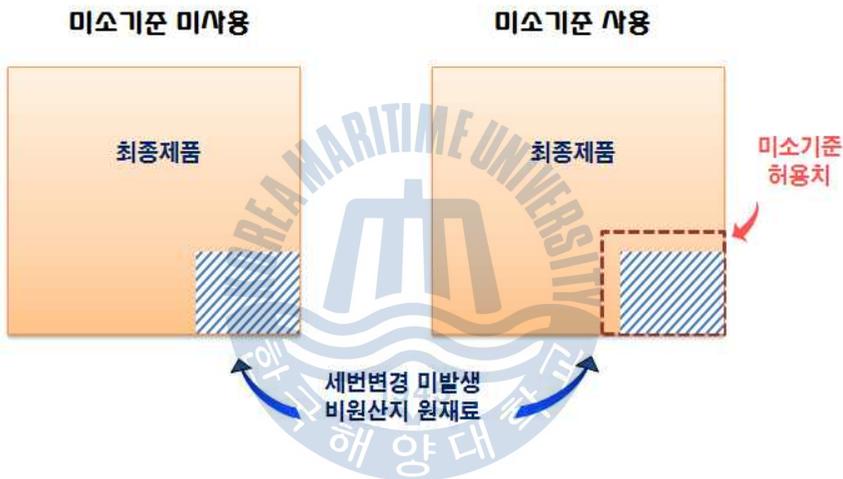
이에 다음 장에서는 FTA 활용에 가장 필수적인 원산지 충족을 위한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동 모델을 활용해 실제로 수익을 창출한 사례들을 소개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수출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 소개된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는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에 따라 업체에 맞는 새로운 유형으로 개발이 가능하다.

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제 4 장 한-미 FTA 원산지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4.1 미소기준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 그림 4-1 > 미소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4.1.1 개요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인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세번이 변경되어야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복잡·다양해지고 분업화되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원재료의 수가 많아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되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미소기준을 이용한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면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재료 중에서 최소기준으로 사용된 재료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

지 못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모델은 제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세번변경기준일 경우에만 적용되며, 이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세번변경기준의 요건이 완화되어 원산지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원산지 확인 비용이 축소된다.

만약, 이 모델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0.1%까지 세번이 변경되어야 그 제품을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수출물품의 세번과 동일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업체인 경우 역내산 원산지 재료를 쓰거나, 수출물품과 세번이 동일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 될 수 없다.

한-미 FTA의 경우 일반품목은 전체 가격의 10%, 섬유품목은 전체 중량의 7%까지 허용기준을 두고 있어 각 품목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협정에서 정한 기준치 범위 내인 경우 세번이 바뀌지 않더라도 제조·가공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미소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가능해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있어 유연성 발휘가 가능해지며 기계류 등과 같이 원재료의 종류가 다양한 물품인 경우 가격이 미미한 비원산지 재료에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 하는 효과가 있다.

4.1.2 사례 분석²⁹⁾

(1) 섬유품목 제조업체 사례

의류제조업체인 D사는 남성용 셔츠(HS 6단위:6105.10)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섬유제조 공정에 대한 뛰어난 노하우와 기술력을 인정받아 까다로운 미국시장의 요구를 충족하여 와이셔츠를 수출하게 되었으나, 해

29) 관세청, 2012. *FTA활용 성공기업 DNA로 본 비즈니스모델 40선*, pp.11-14.

당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한-미 FTA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 표 4-1 > HS코드 610510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HS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6105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105호 내지 제610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5401호 제외)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려면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재료 중 제61류 및 제5401호의 재료가 사용되지 않아야 하나, 해당 물품을 구성하는 비원산지 재료 중에서 재봉사의 HS 6단위가 5401.10에 해당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해당물품의 소요부품명세서는 <표 4-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 표 4-2 > D사 와이셔츠 소요부품명세서

품명(재료명)	세번부호(HS)	원산지	공급자
원단(100% cotton)	5205.47	한국	○○방직
메인라벨(Main Label)	5807.10	홍콩	○○사
심지(Interlining)	6217.10	미상	○○사
재봉사(Sewing Thread)	5401.10	미상	○○상사
어깨테잎(Should Tape)	6217.90	한국	○○상사
⋮	⋮	⋮	⋮

이런 경우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미 FTA의 미소기준을 활용한 모델을 적용하여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완화시켜야 한다.

우선 D 업체의 수출물품은 섬유품목에 해당되어 일반품목과는 달리 중

량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미소기준 산출을 위해 생산품 각 모델별로 총 중량과 구성요소의 개별 중량을 측정하였다.

< 표 4-3 > D사 와이셔츠 미소기준 산출내역

구분	무게(g)	전체무게(g)	미소기준 산출
YOKO 애리	30	244.3	5.58/244.3 × 100 = 2.28 (%)
십지	1.77		
어깨테잎	0.49		
재봉사	5.58		
⋮	⋮		

그 결과 <표 4-3>와 같이 재봉사의 중량이 5.58g이고 제품의 전체 무게가 244.3g으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재봉사가 전체 제품 중량의 2.28%로서 협정에서 정한 총 중량의 7%를 초과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해당 수출물품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D사는 미소기준을 활용한 동 모델을 적용하여 미국으로 수출시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여 우수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을 더해 2012년에 전년대비 67%의 수출이 증가되었다.

(2) 일반품목 제조업체 사례

스피커 등을 제조하는 B 업체는 한-미 FTA 발효를 계기로 관세혜택을 통한 대미 수출확대를 위해 FTA 활용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나, 부족한 인력 및 정보 등으로 인하여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특히, 해당 수출물품인 스피커(HS 6단위:851829)를 한-미 FTA에 따른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표 4-4>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나, B 업체에서 생산되는 모든 스피커에 투입되는 원재료 중 HS코드 4단위가 동일한 재료가 있어 한-미 FTA 활용을 위해서는 4단위 세번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재료의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 확인서 징구가 필수적이었다.

< 표 4-4 > HS코드 851829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HS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8518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품목번호 8518.90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그러나 원재료 공급업체들이 모두 원산지 관리 능력이 부족한 영세기업으로 원산지 확인서를 받는 것이 어려웠고 따라서 미소기준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하였다.

일반물품인 경우 한-미 FTA 협정상 미소기준은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어, 우선 B 업체에서 생산되는 스피커에 사용되는 재료 중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재료 즉, HS 4단위가 8518에 해당되는 재료의 가치를 산출해보기로 하였다.

< 표 4-5 > B사 스피커 미소기준 산출내역

구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비원산지재료의 가치	조정가치	미소기준 산출
A제품	652원	45,000원	1.45(%)
B제품	652원	45,000원	1.15(%)
C제품	484원	40,000원	1.21(%)

그 결과 <표 4-5>와 같이 각 제품의 투입된 동일 세번의 재료의 가치가 해당 제품의 조정가치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해당 수출물품들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B 업체는 미소기준 활용 비즈니스모델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부품업체에 원산지 확인서 작성의 부담을 주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최소한의 증빙 서류만으로도 FTA를 활용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출물품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전년 동기 대비 200% 수출 증대효과를 거두었다.

4.2 중간재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 그림 4-2 > 중간재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4.2.1 개요

세번변경기준에서 대표적인 활용 모델에 미소기준이 있다면 부가가치기 준에서 대표적인 활용 모델로는 부가가치기준의 특례규정인 중간재 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동 모델은 생산자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한 경우 당해 중간제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사용된 역외산 재료를 모두

무시하고 중간제품의 가격 전체를 최종 제품의 역내부가가치로 취급해주는 것으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단할 때 역외산 재료비가 역내산 부가가치에 포함될 수 있어 원산지 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하여 중간재로 사용하는 가공무역이 발달된 자동차 산업에서 생산자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전략적으로 중간재를 생산한다면 FTA 특혜의 향유 가능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미 FTA에서는 자가(自家)생산한 재료³⁰⁾의 경우 일반경비를 포함하여 재료의 생산에 발생한 모든 비용 및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부가되는 이윤에 상당하는 이윤액을 재료의 가치로 인정하도록 하여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중간재의 원산지 인정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에서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가생산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동 모델을 활용하면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할 것이다.

참고로 한-미 FTA에서 동 모델은 역내에서 생산된 중간재에 대해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는 한-EU FTA 및 한-EFTA FTA와는 달리 자가(自家)생산한 재료에 대해서만 중간재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활용하여야 한다.

4.2.2 사례 분석

교환렌즈(HS 6단위:900211)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C 업체는 국내시장 침체 및 유럽경기 악화로 인한 수출량 감소로 위기를 겪게 되어 이를 극복

30) 자가생산된 재료라 함은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생산되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산지 재료를 말한다.

하기 위해 한-미 FTA 발효 전 부터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활용 준비 단계부터 난항을 겪게 되었다.

동 업체가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표 4-6> 과 같은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나, 주요 원재료 중 HS코드 9001로 생산되는 품목이 있어 세번변경기준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며 부가가치비율 또한 협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HS코드 9001에 해당되는 제품을 직접생산하고 있어, 중간재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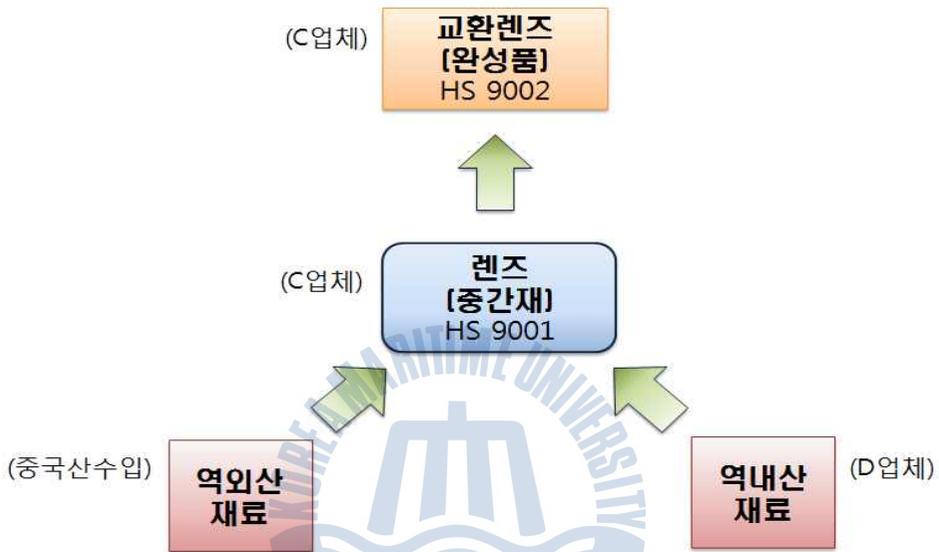
< 표 4-6 > HS코드 900211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HS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8518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품목번호 9001의 것은 제외한다)로부터 생산된 것 2. 품목번호 9001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집적법의 경우 35%, 공제법의 경우 4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C 업체는 <그림 4-3>과 같이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HS코드 9001의 재료(이하 재료A)를 생산하고, 자가 생산된 재료A를 사용하여 교환렌즈를 생산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산과정을 거치는 경우 자가 생산된 재료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재료A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비는 교환렌즈의 역내부가가치 산정 시 비원산지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게 되고, 재료A의 가격이 모두 교환렌즈의 원산지 재료비로 계상되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자가 생산된 재료A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검토한 결과 세번 변경기준을 충족함이 확인되어 해당재료의 가치를 모두 완성품의 가치에 계상하게 되어 역내부가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 그림 4-3 > C 업체 완성품 생산 흐름도

따라서 C 업체는 동 모델을 적용하여 관세율을 2.3%에서 0%로 절감하여 한-미 FTA를 적극 활용한 결과 40만불 가량 미국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대미 수출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 사례는 생산자가 역외산 및 역내산 재료를 혼합하여 중간제품을 생산하더라도 중간제품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면 역외산 재료를 무시하고 중간제품의 가격 전체를 최종 생산제품의 역내부가가치로 취급해주는 중간재 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사례로 원재료를 자가생산하는 업체가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때 동 모델을 활용하면 역외산 재료비가 역내산 부가가치에 포함되어 원산지 기준 충족을 용이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4.3 누적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 사례



< 그림 4-4 > 누적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4.3.1 개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해서 수출자는 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국내에서 제조·가공과정을 거친 제품을 생산·수출하여야 하나, 계약상대국에서 생산한 물품을 자국에서 생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누적규정을 활용한 모델을 적용하면 수출자가 계약상대국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라도 수입원재료를 국내산으로 인정하여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데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동 모델을 활용하면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의 사용과 역내가공을 촉진하고 시장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결국 FTA 체결국 간 무역을 촉진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

누적규정은 보통 재료누적과 공정누적으로 나뉘지는데 재료누적은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사용할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원산지 판정시 원산지물품으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공정누적은

상대국 수행 생산공정을 자국 수행 생산공정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한-미 FTA 협정문 제6.5조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이나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할 수 있다.

또한 각 당사국은 상품이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그 상품은 원산지상품임을 규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한-미 FTA에서도 재료누적 및 공정누적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동 모델을 활용하면 수입산 원부자재 사용이나 해외 임가공이 필수적인 산업에서 국내산 원재료만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국의 재료사용(재료누적) 및 계약국 내 제조·가공(공정누적)을 통해 원가절감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두 가지 모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4.3.2 사례 분석

페인트를 전문으로 제조하는 S 업체는 생존경쟁이 치열한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준비하는 중 한-미 FTA가 발효되어 3.6%의 관세가 절감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한-미 FTA 활용을 위해 해당 수출물품(HS 6단위:3208.20)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였다.

< 표 4-7 > HS코드 320820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HS 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3208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해당 수출물품은 원재료의 HS 2단위가 변경되면 완성품의 HS 2단위로 변경되면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충족되나, <표 4-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수출물품을 구성하는 원재료 중에서 HS코드가 320820로 수출물품의 품목번호와 동일한 제품이 있어 세번이 변경되지 않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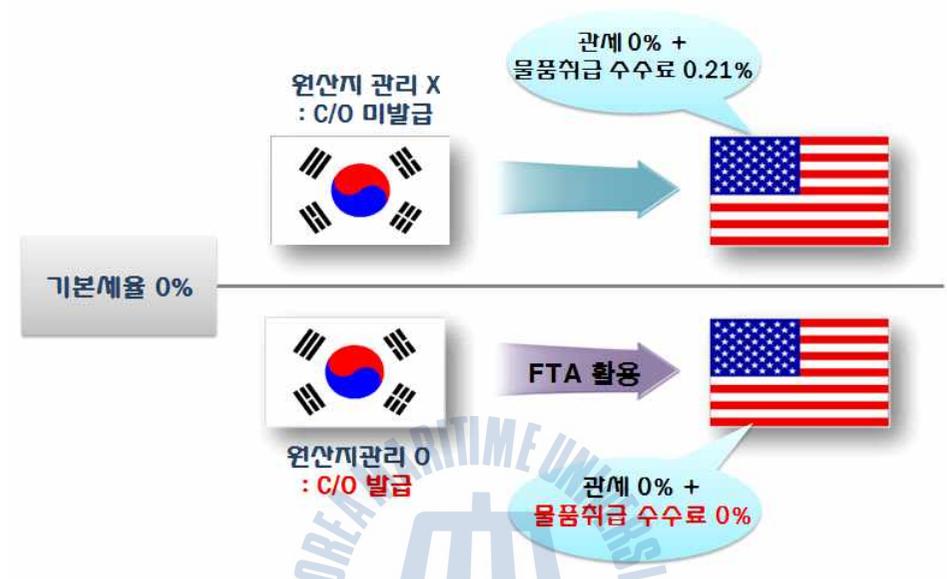
< 표 4-8 > S사 페인트 소요부품명세서

품명(재료명)	세번부호(HS)	원산지	공급자
Resin	390690	미국	○○케미칼
Silica	281122	미상	○○사
Polymer	320820	미국	○○교역
∴	∴	∴	∴

이러한 경우 누적규정을 활용하여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국산 원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미국에서 수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누적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를 구비하여야만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S사도 <표 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당 제품이 미국에서 수입되었지만, 수입 후 사후에 다시 미국의 Polymer 수출자로부터 한-미 FTA에 따른 원산지 신고서를 확보하여 누적규정을 적용하여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었고 이후 한-미 FTA를 활용하여 한-미 FTA발효 2월간 전년대비 70%의 수출증가(76.4만불 수출실적)의 성과가 나타났다.

4.4 물품취급수수료 면제활용 모델 사례



< 그림 45 > 물품취급수수료 면제규정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4.4.1 개요

물품취급수수료 면제활용 모델은 직접적인 원산지규정 활용 모델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협정에 나와 있는 규정을 활용한 원산지 관리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물품취급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란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미국 관세 및 국경보안청(CBP : Customs Border and Protection)이 미국 관세법과 무역법을 준수 할 것인지를 심사하는 명목으로 징수하는 비관세 행정수수료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문 제2.10조 제4항(“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물품취급 수수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에 따라 원

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동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관세철폐 혜택이 원산지 제품에 한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품취급수수료 납부도 원산지 제품에 한해 면제가 된다.

관세절감효과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도 원산지 관리를 통해 한-미 FTA를 활용하여 수출할 경우 수출 건당 최대 \$485의 물품취급수수료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절감분만큼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동 모델을 활용한다면 계속적인 무관세 적용 물품이라도 원산지 관리를 통해 한-미 FTA 활용조건을 충족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경우, 관세절감 혜택은 발생하지 않아도 물품취급수수료 면제와 통관시간 단축 등 비관세혜택이 발생하여 FTA 활용효과를 누릴 수 있다.

< 표 4-9 > 물품취급수수료 징수근거 및 내역

종류	징수근거	징수내역
물품취급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예산 총괄조정법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 ○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종과세) ○ ①미국속령의 제품, ②최빈 국가의 제품, ③카리브연안 특혜 대상국가의 제품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불 이상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가격의 0.21% (최대 건당 \$485) ○ 2,000불 이하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신고 : \$2 - 수동신고(개인) : \$6 - 수동신고(세관) : \$9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 한-미 FTA 주요내용

4.4.2 사례 분석

페타이어 고무를 활용하여 토목건축용 첨단 방수재 등 신소재를 개발하는 T업체는 한-미 FTA가 발효되자 주요 대미 수출물품인 t제품에 대하여 한-미 FTA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해당물품이 무관세 품목임을 확인하여 활용 혜택이 없다고 판단하고 활용을 포기하였다.

그러던 중 해당물품이 관세혜택은 없어도 한-미 FTA 협정문 제2.10조에

따라 한국산인 물품에 대하여 물품취급수수료를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적극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였다.

이에 해당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혜택은 없었지만, 원산지 증명을 통해 수출시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되어 가격경쟁력이 향상됨은 물론 최장 3일까지 소요되던 통관시간이 하루 이내로 줄어드는 효과까지 누리게 되었다.

T업체와 같이 한-미 FTA에 따른 관세면제 혜택이 없다고 한-미 FTA를 활용하지 않는 업체들이 동 물품취급수수료 면제활용 모델을 참고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한다면 물품취급수수료 절감혜택과 통관시간 단축 등 비관세혜택이 발생하여 FTA 활용효과 획득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5 장 결 론

5.1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적극적인 FTA 추진정책으로 총 9건의 FTA를 체결하였으며, 특히 금년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그 의미가 각별하고 할 수 있다.

한-미 FTA 발효로 우리나라 경제영토는 전 세계시장의 61%까지 확대되었으며,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수출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어려움을 극복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미 FTA가 교두보 역할을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들은 한-미 FTA를 미국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미국시장 개척을 위해 한-미 FTA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하고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업들은 한-미 FTA를 활용함에 있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전문 인력 확보, 협력업체 관리 등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가 협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되어야만 특혜 적용이 될 수 있으나,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원산지 기준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 기준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이러한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미국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FTA 무역환경에서 기업의 관세특혜 및 이윤극대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절차와 과정을 의미하는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활용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한-미 FTA 원산지 규정 중 미소기준, 중간재규정, 누적규정, 물품취급수수료 면제규정을 활용한 모델과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한-미 FTA를 활용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FTA 원산지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벤치마킹하여 즉시 기업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첫째, 미소기준을 이용한 모델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이 가능해져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에 있어 유연성 발휘가 가능해지며 기계류 등과 같이 원재료의 종류가 다양한 물품인 경우 가격이 미미한 비원산지 재료에 미소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 관리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중간재규정을 활용한 모델은 생산자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중간재를 생산할 경우, 그 중간재가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면 생산에 투입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도 국산으로 간주하는 모델로 특히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자가생산하는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동 모델을 활용하면 원산지기준 충족이 용이해 진다.

셋째, 누적규정을 활용한 모델은 수입산 원부자재 사용이나 해외 임가공이 필수적인 산업에서 국내산 원재료만으로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체약상대국의 재료사용(재료누적) 및 체약국 내 제조·가공(공정누적)을 통해 원가절감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두 가지 모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품취급수수료 면제규정을 활용한 모델은 지속적인 무관세 적용 물품이라도 원산지 관리를 통해 한-미 FTA 활용조건을 충족해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경우, 관세절감 혜택은 발생하지 않아도 물품취급수수료 면제와 통관시간 단축 등 비관세혜택이 발생하여 FTA 활용효과를 누릴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논문은 한-미 FTA 원산지 규정의 이론적 바탕으로 FTA 비즈니스 모델과 해당 모델을 통한 실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최대한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 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미 FTA 원산지 규정 활용 모델에 관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 고, 한-미 FTA가 발효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보편적이고 다양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

또한 모든 한-미 FTA 원산지 규정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소개 하지 못하고 사례 분석을 통한 FTA 활용을 제안함에 있어서도 대표 품목 몇 개의 사례만을 제시하여 그 범위가 상당히 제한 적이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델들은 업체의 상황과 거래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 으므로 동 모델을 자기 실정에 맞게 적용하고 응용하여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제대로 된 한-미 FTA 비즈니스 모델과 사례가 구축되고 수집되 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 한-미 FTA 활용도가 높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수년에 걸친 분석과 추가적인 연구가 따라야 할 것 이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013. 한미 FTA발효 1년간 주요성과, pp. 1-5.
- 관세청, 2012. FTA활용 성공기업 DNA로 본 비즈니스모델 40선.
- _____, 2011. 한-미 FTA 활용매뉴얼.
- 김광열, 2012.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한-미 FTA 비즈니스 활용전략 및 모델 구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pp.9-10.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한-미, 한-EU FTA의 원산지 검증방식 분석과 시사점.
- _____, 2006. 한-미 FTA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 명진호 외, 2013. 한-미 FTA 1주년 평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pp.5-7.
- 박재봉, 2005. 자유무역협정(FTA)체제가 관세행정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pp.15.
- 부산경제진흥원, 관세청, 2012. 부산지역기업의 FTA체결국 교역현황 및 활성화방안, pp.6-9.
- 성윤갑, 2007. FTA 관세특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_____, 2007. FTA 원산지 해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손수석, 최명국, 2011. 대구경북지역 기업의 한-EU FTA 활용 비즈니스모델 개발, 대구경북연구원, pp.53-79.
- 외교통상부, 2011. 한-미 FTA 상세설명자료.

이선자, 2008. 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한칠레,한미 FTA를 중심으로한 사례연구, 석사학위 논문, 원광대학교, pp.4-5.

이성임, 2010. FTA 원산지규정을 활용한 수출 전략, 석사학위 논문, 부산: 부경대학교, pp.60.

이정숙, 2006.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석사학위 논문, 순천향대학교.

최홍석, 이영달, 2011. FTA시대 원산지 이론과 실무,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2006. 한-미 FTA 교육서비스 협상 전략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연구, pp.11.

한국무역협회, 2007. 한-미 FTA 100%활용하기, pp. 31-82.

한국조세포럼, 2011. FTA상대국의 원산지검증관련 소송사례 분석을 통한 원산지검증행정 효율화 방안.

관세청 FTA 포털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okfta.kita.net>

FTA 종합지원포털 홈페이지 <http://www.ftahub.go.kr>

WTO 홈페이지 <http://www.wto.org>